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3.25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유가 급등 틈탄 비축 차단" 휘발유·경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p.1
- 02 '덤핑방지관세' 정기점검한다...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p.2
- 03 "영국도 철강 장벽" 쿼터 60% 축소·관세 50% 추진 p.4
- 04 선박유 블렌딩 절차 대폭 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p.5
- 05 면세품 교환 간편화 및 FTA 원산지검증 절차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p.7

1

“유가 급등 틈탄 비축 차단” 휘발유·경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3월 13일 시행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석유제품 수입신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을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2026-66호)」가 3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경유·등유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 물량을 신고하지 않고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며 가격 변동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31~50일 지연 시 과세가격의 0.5%, ▲51~80일 1%, ▲81~110일 1.5%, ▲110일 초과 시 최대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부과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 품목도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 10단위 기준 3개)

| 할당관세품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 자동차 휘발유 | 제2710.12-1000호 | 2026.3.13. ~ 2026.5.12. |
| 경유 | 제2710.19-3000호 | |
| 등유 | 제2710.19-2010호 |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출처: 관세청)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석유제품 수입량(내수용)

(단위: 톤)

| 품목(HS 10단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2월 | 2026년 2월 | 동기 대비 |
|-------------------------------|--------|--------|--------|----------|----------|--------|
| 자동차휘발유 (HS 제2710.12-1000호) | 15 | 16,582 | 16,608 | - | 1 | - |
| 경유 (HS 제2710.19-3000호) | 53,053 | 37,184 | 28,444 | 6,235 | 3,422 | -45.1% |
| 등유 (HS 제2710.19-2010호) | 0.6 | 0.2 | 0.6 | 0.1 | 0.05 | -20.1% |

(출처: 관세청)

2

‘덤핑방지관세’ 정기점검한다...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28개 품목 4년 주기 점검·AI 기반 모니터링 구축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비정기적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ی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입 건별로 조사하거나 특정 시기 및 사안 발생 시 기획 관세조사 중심으로 실시했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덤핑 조사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3년 8건, 2025년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도입해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을 4년 주기로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해 진행된다. 수입통관 자료와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을 포함한 통합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 체계를 비정기적 대응에서 상시·체계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2

'덤핑방지관세' 정기점검한다...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28개 품목 4년 주기 점검·AI 기반 모니터링 구축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2026년 2월 기준)

| 연번 | 품목명 | 품목 | 대상국 | 관세율(%) |
|----|--|-------|-------------------|-------------|
| 1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 제철/금속 |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 7.17~25.82 |
| 2 | 부틸글리콜에테르 | 화학 | 사우디아라비아 | 43.58 |
| 3 | FDY | 섬유 | 중국 | 3.95~10.91 |
| 4 |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더블레이어 제품) | 기타 | 중국 | 3.60~7.61 |
| 5 | 폴리아미드 필름 | 화학 | 중국, 태국, 인니 | 4.90~28.60 |
| 6 | 이음매 없는 동판 | 제철/금속 | 중국, 베트남 | 9.98~18.12 |
| 7 | 수산화알루미늄 | 제철/금속 | 중국, 호주 | 13.99~37.96 |
| 8 | 백시멘트 | 유리/도자 | 이집트 | 60.83 |
| 9 | PET 수지 | 화학 | 중국 | 7.00~7.98 |
| 10 | OPP필름 | 화학 |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 2.15~25.04 |
| 11 | H형강 | 제철/금속 | 중국 | 28.23~32.72 |
| 12 |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 기타 | 중국 | 8.78~10.32 |
| 13 | PET필름 | 화학 |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 3.19~60.95 |
| 14 | 플로트 판유리 | 유리/도자 | 중국 | 36.01 |
| 15 | 부틸글리콜에테르 | 화학 | 미국, 프랑스 | 20.10~25.00 |
| 16 | PET필름 | 화학 | 중국, 인도 | 2.20~36.98 |
| 17 | 페로실리코망간 | 제철/금속 | 베트남, 인도 | 2.30~11.04 |
| 18 | 도공인쇄용지 | 종이/목재 | 일본, 중국, 핀란드 | 8.22~16.23 |
| 19 | 합판 | 종이/목재 | 말레이시아 | 4.73~38.10 |
| 20 | 합판 | 종이/목재 | 중국 | 3.30~27.21 |
| 21 | 침엽수 합판 | 종이/목재 | 중국 | 7.15 |
| 22 | 합판 | 종이/목재 | 베트남 | 9.78~31.28 |
| 23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 제철/금속 | 베트남 | 11.37~18.81 |
| 24 | 석유수지 | 화학 | 중국, 대만 | 3.07~18.52 |
| 25 | 스테인리스강 후판 | 제철/금속 | 중국 | 21.62 |
| 26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 | 제철/금속 | 중국 | 27.91~38.02 |
| 27 | 차아황산소다 | 화학 | 중국 | 15.15~33.97 |
| 28 | 파티클보드 | 종이/목재 | 태국 | 11.82~17.19 |

출처: 관세청

3 “영국도 철강 장벽” 쿼터 60% 축소·관세 50% 추진

세이프가드 대체 조치 도입...한국 수출 영향 우려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철강 통상환경이 한층 경직될 전망이다.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인상 등 강도 높은 보호조치가 포함되면서 우리 철강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현지시간) 영국정부는 ‘신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 확대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철강 수입 쿼터는 현행 대비 약 60% 축소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한 철강의 생산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강(melt&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 원산지 판정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쿼터를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제28조(양허 수정)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중일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정책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철강 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3월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3%(2025년 기준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쿼터가 60%로 축소될 경우 일정 수준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뿐 아니라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국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의 철강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철강 제품을 억제하고 자국 철강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다만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에서는 원가 상승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영 경제금융대화에서 양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문제,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향후 철강 무역조치와 관련한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선박유 블렌딩 절차 대폭 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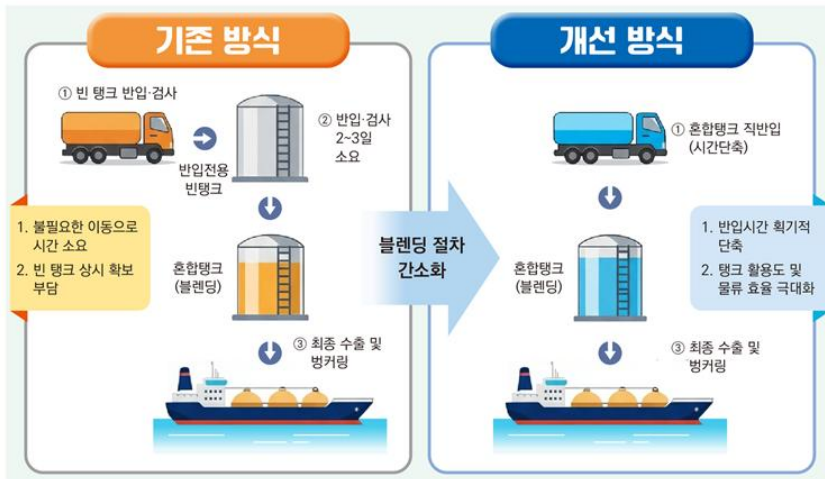
관세청, 북극항로 대비 규제 완화... 벙커링 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이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블렌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공정 단계를 제거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내 항만의 벙커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경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탄소·저황 선박유 등 친환경 연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에 민감해 일반 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돼, 친환경 선박유 확보가 항로 개척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종합보세구역을 활용한 선박유 블렌딩 및 벙커링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1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석유·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 연료로 공급되는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출처: 관세청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4 선박유 블렌딩 절차 대폭 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관세청, 북극항로 대비 규제 완화... 벙커링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블렌딩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받은 뒤, 이를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업체는 별도로 비어 있는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블렌딩 기간이 단축되고 탱크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부산·울산·여수 등 주요 항만 지역의 블렌딩 산업 활성화와 국제무역선 대상 벙커링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친환경 선박유 수요 확대에 대응해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규제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5 면세품 교환 간편화 및 FTA 원산지검증 절차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2024년도 '방향은 올바르게, 해결은 바로'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관세청은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출범해 10대 중점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불편 해소 분야 5개 과제, 수출입기업 지원 분야 5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3월 19일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해 ▲국민 불편 해소와 ▲수출입 기업 지원 2개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인 화주의 과오납 환급 신청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3월 중으로 시행된다.

5월부터는 상표권 침해로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 보류된 경우 구매자가 직접 세관에 '통관 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하는 대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조회 체계도 개선된다. 6월부터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도 결정문 통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세공장 운영인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 반입신고를 위해 의무 시행하던 고무도장 날인 절차를 폐지하고 반입신고서 작성시 전산입력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범위 이내 물품을 입국 후 교환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고도 시내면세점에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이다.

| 분야 | 과제 개요 |
|--------|---|
| 국민불편해소 | 1.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 개선 교환 시 자진신고와 재출국 필수 → 면세 한도 이내는 방문·우편·택배 가능 |
| | 2. 상표권 침해로 통관 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구매자가 세관에 발급 요청 → 유니패스에서 통지서 바로 발급 |
| | 3. 개인 화주 과오납 환급신청 결과 알림톡 제공 유니패스 시스템 접속 개별 조회 → 알림톡으로 실시간 제공 |
| | 4. 품목분류사전심사(재심사) 결정 통지·시스템 조회 체계 개선 대리인에게만 결정문 통지 → 수출입업체에게도 결정문 통지 |
| | 5.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물품 반입 신청절차 개선 신청서에 항목마다 고무도장 날인 → 날인 폐지(전산 입력으로 가능)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5 면세품 교환 간편화 및 FTA 원산지검증 절차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2024년도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6월부터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규제 문턱은 낮아질 예정이다.

수출입화물의 통관 검사 비용 신청 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청 기한 60일을 넘긴 경우 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완화된다.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은 먼저 거래와 판매를 허용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복합물류보세창고로 반입된 물품의 수입통관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이 제한됐지만 운영업체가 AEO 인증을 받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FTA 원산지검증 제도도 개선된다. 원산지 위반기업에 제공하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컨설팅인 평가회의를 수출 원산지검증뿐만 아니라 수입 원산지검증 시에도 제공하며,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FTA 수입 원산지 자율점검 단계를 생략하고 원산지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분야 | 과제 개요 |
|---------|--|
| 수출입기업지원 |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예외인정 규정 신설 검사 완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연장 허용 |
| |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 부담 최소화 시정조치 완료까지 거래·판매 불허 → 조치완료한 일부 물품 거래·판매 허용 |
| | 3.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 수입통관 제한적 허용 원칙적으로 수입통관 불허 → AEO 기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 |
| | 4. FTA 원산지검증 종료 후 사후 컨설팅 대상 확대 수출 원산지 검증 후에만 개최 → 수입 원산지 검증 후에도 가능 |
| | 5. FTA 수입 원산지 자율점검 절차 개선 자율점검은 필수 절차 → 기업 요청 시 자율점검 생략 |

관세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6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도 모집한다.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은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